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4100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4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협박

피고인 A

검사 송선민(기소), 김지수,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 어플을 통해서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3세)의 사진을 보고 메신저 대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또래로 속인 채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9. 23:56경 대전 유성구 D, 409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오빠가 너 좋아해, 팬티 뭐 입었어? 색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57경 다시 전화하여 "오빠가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잠옷 입고 있어?"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3:56경 "전화 끊지마, 너 끊으면 집도 아니깐, 너 죽을 줄 알아, 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57경 다시 전화하여 "너 자꾸 끊으면 혼날 줄 알아, 끊지마, 어?, 또 까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음 날 00:00경 "이 씨발년아, 내 전화 늦게 받지 말랬잖아, 빨리 받으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속기록(피해자)
- 1. 수사보고(통화기록, 녹취내용 및 파일 CD 첨부에 대한 건), 통화기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판사 이재원